이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 DC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확정기여형(DC)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주요 내용

| 구 분  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-|--|
| 신탁기간       | <ul><li>◇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"신탁계약 해지일", "신탁계약 전부 이전일"또<br/>는 "신탁계약 종료일"까지로 합니다.</li></ul>  |
| 수익자        | ◇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.  |
|            | ◇ 수익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(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),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<br>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.   |
| 신탁재산<br>운용 | ◇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.  |
|            | ◇ 가입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.   |
|            | ◇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에 대해 고<br>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 |
|            | ◇ 은행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합니다.  |
| 수수료<br>부과  | <ul><li>◇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약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<br/>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 잔액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<br/>하여 계산합니다.(계약응당일 : 최초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)</li></ul>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<ul> <li>◇ 자산관리수수료율 : 0.28%</li> <li>※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'통합연금포털'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함</li> </ul>   |
|            | ◇ 장기계약할인 : 2차년도 10%, 3차년도 12%, 4차년도 이후 15%   |
|            | ◇ 중소기업 할인 : 자산관리수수료 5% 할인  |
|            | ◇ (예비)사회적기업 : 자산관리수수료 70% 할인, (사회적)협동조합/마을/자활기업 : 자산관리수수료 50% 할인,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/시설 : 자산관리수수료 50% 할인  |
|            | ◇ 운용관리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부과 및 할인 적용  |
| 신탁금<br>지급  | ◇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<br>지급합니다.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<br>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 단, 관련 법령에서<br>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 |
|            | ◇ 은행은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<br>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.   |
|            | ◇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<br>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.  |
| 구속성        | <ul> <li>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)에 따라 기업대출 거래 중(예정)인 중소기업 · 중소기업대표자 · 개인사업자 및 개인대출 거래 중(예정)인 개인사업자는 「여신실행 전·후 1개월 동안 확정기여형(DC) 신규」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◇ 확정기여형(DC) 가입 후 1개월 내 대출 거래 예정인 고객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  |

<sup>※</sup> 본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.



## 2 유의사항

-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🛂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- ▶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투자성 상품의 과거 운용실적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≥ 본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 확정기여형(DC) 계약 시 유의할 사항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으로 자산관리신탁계약서, 상품별 약관을 추가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우리은행 영업점, 퇴직연금 상담센터(1599-1000, 평일 09:00~18:00), 우리은행 홈페이지(www. wooribank.com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- 2 - (문서번호 : 205100, 제조일 : 2025.06 제정) - 우리은행